

## || 일반사항

### [ 첨단생산기술에 있어 국제적 협력체제를 위한 프로그램 관련규정 ]

#### I. 목적

이것은 IMS의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국제적 협력체제를 위해 IMS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국들을 위한 관련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 II. 목표

IMS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제조공정에 있어 좀더 복잡한 (정교한)기술의 적용
- B. 국제화시대로의 발전
- C. 재생가능한 자원의 사용으로 인한 효율의 증대
- D. 사용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환경의 창출
- E. 제조환경의 질을 개선
- F. 향후 세대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조원칙의 개발
- G. 제조업의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H. 세계를 둘러싼 시장의 개방과 확대
- I. 제조기술에 대한 교육제도의 확립과 세계적인 추세를 제시함으로써 제일의 제조기술로의 도약

이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IM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것에 대한 촉매작용을 해야 한다.

- A. 대, 중소기업, 사용자와 공급자, 대학,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거대한 제조협력체제
- B. 중요한 제조기술 향상의 결과를 전세계에 보급
- C. pre-standardization 주제에 대한 협동 연구작업을 통해 표준화를 위해 제조업이 취할점의 개발
- D. 제조공정에 있어 협력체제를 위한 우선순위의 선택 및 평가
- E. 참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협력관계의 계획에 대한 일관된 지침서, 조항, 모델동의서의 보급, 이해 및 적용

### III. 배경

IMS 프로그램을 정의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 (Feasibility Study)에 참가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 호주
- 캐나다
- 유럽공동체
- 유럽 자유무역연합국(EFTA)의 참가국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 노르웨이, 스위스
- 일본
- 미국

EC와 EFTA 나라들은 단일 유럽지역으로 함께 활동하였다.

참가국들은 첨단생산에 있어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하기위해 관련규정하에서 연구를 완성하였다.

국제운영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타당성연구가 첨단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있어 훌륭한 국제 협력프로그램 이었음을 밝혔으며, 공평한 관리구조 속에 동등한 outcome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full-scale)의 시작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관리구조, 기술테마, 지적 소유권의 조항들을 준비했다.

### IV. 원칙

제조업은 부의 중요한 원천이며 경제성장을 위한 건실한 경제기반을 다지는데 있어 필수요소이다. 우수한 제조공정에 대한 요구는 국제화된 시장 체제의 상황으로 볼 때 중요하게 되었다.

첨단생산분야에 있어 연구개발 부문의 역할은 제조공정에서 점차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으며 현재 첨단생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첨단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있어 국제적 협력체제를 잘 조정한다면 그것은 제조공정의 향상을 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첨단생산에 있어 국제적 협력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 A. 공정과 균형속에서의 공헌과 이익을 꾀한다.
- B. 공동 프로젝트는 산업간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 C. 공동 프로젝트는 지역간,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콘소시움에 의해 수행된다.
- D. 공동 프로젝트는 혁신사이클(full innovation cycle)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 E. 공동 프로젝트는 정보보급의 과정을 통해 공유된다.
- F. 정부의 후원과 정부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IMS 프로젝트 활동은 경쟁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V. 프로그램 구조와 자금조달

IMS 프로그램은 참여국들이 함께 산업간 경쟁을 지원(촉진)하고 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첨단제조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국제적 협력체제이다. IMS프로그램의 범위는 실용가치가 넓다.

A. IMS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관리구조(management structure)에 의해 통제된다.

1. 국제 IMS 운영위원회 (International IMS Steering Committee) :
2. 지역간 사무국 (Inter-Regional Secretariat) :
3. 지역 사무국 (Regional Secretariats)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지적소유권 조항들을 따라야만 한다. 지적소유권 조항은 최소한의 일련의 의무조항들, 비의무(non-mandatory) 조항들, 그리고 추가적 조항들을 포함한다.

B. 관리구조를 위한 자금조달

1. 각 참가국은 스스로 자금조달을 한다
2. 각 참가국은 스스로 자금조달 방법을 결정한다.
3. 각 참가국은 지역간 사무국의 운영비 지출에 대해 자금조달 또는 지불과 관련하여 공정한 방법을 통해 기여한다.
4. 각 참가국은 자신의 대표단을 지원하고 필요한 책임준비금 (liability coverage)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C.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1. 각 참가국은 스스로 자금조달을 한다.
2. 각 참가국은 스스로 자금조달 방법을 결정한다.

## VI. 관리구조

### A. 국제 IMS 운영위원회

IMS 프로그램은 IMS운영위원회에 의해 감독되어 진다. 운영위원회 멤버들은 제조와 관련한 산업분야, 학술분야 등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다. 멤버들은 IMS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

#### 1. 구성 : 각 참가국의 2명의 멤버와 1명의 업저버

각국의 대표단은 산업, 학계, 정부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멤버 2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산업분야에서 선출 되어야 하며 대표단의 책임자는 non-governmental 이어야 한다. 또한 업저버들은 dictates로 바꾸어 질 수 있다.

2. IMS 운영위원회는 멤버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3. 의장직: IMS운영위원회의 의장은 6개 참가국들이 교대로 하게 된다. 의장의 임기는 2년 동안이다.

의장이 있는 참가국은 그 임기동안 지역간 사무국을 통제하는 책임을 진다. 캐나다가 첫번째 의회장의 임기를 맡을 것이다. 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2번째 임기를 맡을 것이며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캐나다를 도와 처음 임기동안에 부의회장으로 활동한다. EFTA는 3번째 임기를 맡을 것이다. 후속 위원장의 순서는 IMS프로그램의 개발후 3년안에 결정될 것이다.

4. 책임: IMS 운영위원회는 IMS 프로그램의 발전과 착수를 위해, 그리고 새 참가국의 문제를 위해 정책과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 a. 전반적인 지침서 제공, 전략적 우선순위의 결정과 프로그램 실행의 계획
- b. 새로운 IMS 문서의 인정 및 후원
- c. 임시의 태스크포스 또는 위원회 형성 (예 :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위해)
- d. 지역간 사무국 감독
- e. IMS와 제조업을 위한 국제적인 promotion 제공
- f. section 9에 제시된 프로젝트의 승인
- g. 참가국들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목표, 원칙, 프로그램 구조에 따라 일관성있게 착수되는 프로젝트와 연구작업의 승인
- h. IMS운영위원회, 지역간 사무국, 지역 사무국, 그리고 프로젝트 콘소시엄 멤버들간의 원활

한 의사소통 촉진

## B. 지역간 사무국

IMS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있는 참가국은 지역간 사무국들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지역간 사무국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1. 지역간 proposal을 위한 logistic제공
2. IMS 모임과 문서들의 유지 및 배포
3. IMS 운영위원회의 방향에서 지역간 홍보를 위한 logistic 제공
4. 새롭고 전망있는 참가국 교육
5. 프로젝트 기간동안, 프로젝트 결론에 대한 정보의 보급
6. 지역간 콘소시움 결성 지지
7. IMS 운영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또는 작업의 조정 및 정리

## C. 지역 사무국

참가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들은 그들의 지역 사무국을 조직하고 통제할 것이다. IMS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지역간 proposal을 위한 지역별 logistic 제공
2. 각자의 지역내에서의 IMS 모임관련 또는 기타 문서들의 유지, 배포
3. 지역모임을 위한 logistic 제공
4. 각 지역내에 프로젝트 기간동안, 프로젝트 결론에 대한 정보의 보급
5. 각자의 지역내에 콘소시움 결성을 지지
6. IMS 운영위원회 모임에 참석하는 지역대표단 지지
7. 지역별 선정과 재검토방안 촉진
8. IMS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하부구조집단과 연합

## VII. IMS 프로그램의 시작

IMS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에 대해 착수할 것이다.

- (1) 각 참가국에 의한 IMS 프로그램을 위한 관련조항의 비준
- (2) IMS 운영위원회의 멤버 지정

(3) 지역 사무국의 지정

## VIII. IMS 프로그램의 완료

IMS 프로그램은 총 10년을 기간으로 프로그램의 시작일에 맞추어 끝낼 것이다.

## IX. 신규 참가국의 가입절차

A. 신규가입 희망 지역의 정부당국은 우선 IMS 프로그램을 위해 관련조항(TOR)들을 따라야만 한다.

B. IMS 프로그램을 위한 관련조항의 비준후, 신규지역, 정부의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다른 지역 관련자들의 동의를 얻어 콘소시움 결성을 인정받는다. 신규지역 관련자들의 공헌도는 신규지역 참가자들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시기 동안에 주의깊게 검토되어질 것이다.

C.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정부는 신규지역이 IMS 운영위원회의 대표단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 X. 콘소시움 구성

지역간 사무국과 지역 사무국은 IMS프로젝트를 위한 콘소시움 결성을 위해 협력한다.

### A. 기본적인 콘소시움 작성양식

지역간 사무국과 지역 사무국은 TOR의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한다.

- 프로그램의 구조
- 운영구조와 목표
-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사항과 콘소시움 선정
- 기술적 테마
- 평가과정과 선정과정,

## B. 국제 coordinating partner

국제 coordinating partner는 각각의 콘소시움에 의해 선정되어야만 한다. 임명된 국제 coordinating partner는 복잡한 국제공동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경쟁적인 프로젝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능력이 요구되며 산업체에서 선정되어야만 한다. 국제 coordinating partner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coordinate 콘소시움 결성
2. full proposal 준비
3. 콘소시움이 ISC 및 IRS와의 긴밀한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주요한 contact point의 역할
4.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촉진
5. 프로젝트 조정을 위한 제반 노력

## C. 관련자들의 리스트(List of Interested Entities)

지역내 지역사무국은 산업, 학계, 행정 분야의 모든 기관에 IMS 프로그램을 위한 국내의 자금상황, 계획안, 기본문서들을 배포할 것이다. 지역 사무국은 관련자들의 리스트를 집계할 것이며 그 리스트는 각 관련자들의 능력과 참석의 정도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 D. 관련자들의 리스트 교환

이러한 리스트는 update 될 것이며, 지역간 사무국을 통해 모든 다른 지역으로 배포될 것이다. 지역 사무국은 다른 지역의 관련자 리스트를 또한 가지고 있다. 지역 사무국은 국내와 국외 간의 공통관심사를 키우고 콘소시움의 결성을 촉진시킨다.

## E. 프로젝트 제안의 교환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지역이면 어디든 준비된 proposal을 지역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지역 사무국은 이러한 제안들을 리스트에 기재된 모든 관련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국제콘소시움을 결성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

## XI. 프로젝트 평가, 선정 및 재검토

제안건들은 관련조항에 제시된 원칙, 프로그램 구조, 지적소유권 조항들에 맞게 작성되어야만 한다.

## A. 프로젝트 선택기준

1. 산업관련성
2. 부록 1의 사항에 준수하여 작성된 기술적 테마들도 종종 IMS 운영 위원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3. 과학적, 기술적 우수성
4. 채택과 상업화의 가능성
5. 부록 2의 사항에 준수하여 작성된 지적소유권 조항들은 종종 IMS 운영위원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6. 부가가치

## B. 컨소시엄 선정기준

### 1. 파트너들의 지역간 분포

컨소시엄 파트너들은 적어도 3국의 참가가 있어야 한다.

### 2. 공헌과 이익의 균형

컨소시엄 파트너들은 참가자의 공헌과 그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공정하고 균형있게 설정되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공헌도는 각 관련자와 그룹을 위해 type별로 value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 3. 지역간 리더쉽

지역간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운영을 위한 국제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야만 한다.

### 4. 결과의 배포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결과와 IMS 컨소시엄을 운영하면서 익힌 내용들을 배포할 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 C. 프로젝트 평가

### 1. 프로젝트 요약본 평가(Project Abstract Evaluation)

컨소시엄은 계획된 연구조사의 요약본을 제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약본은 지역별 검사를 위해 지역 사무국으로 제출 되어진다. 각각의 대표단은 IMS 운영위원회에 권고를 할 것이다. 채택받지 못한 프로젝트의 제안자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것이다.

### 2. 전체 proposal 평가(Full Proposal Evaluation)

컨소시엄은 자세한 평가를 위해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최종 proposal을 제출하여야 한다. proposal은 IMS 프로그램을 위한 원칙, 구조, 지적 소유권 조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포함할

것이다.

### 3. 마지막 승인

마지막 승인은 지역별 권고사항과 제출된 proposal에 기초하여 IMS 운영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 D. 프로젝트 검토

IMS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진행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협회는 IMS 운영위원회에 1년에 한번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XII. 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정부기관과 비교하여 본 IMS의 역할 (Role of IMS vis-a-vis SME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참가국들과 국제 IMS 운영위원회는 IMS 프로그램에 있어 중,소기업을 직,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모든 지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 A.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상세한 보고
- B. 참가국들의 실행법과 관습에 있어 따르는 제약조건의 "road map"과 그것의 실행결과
- C. 전자업체는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도울수 있는 능력을 탐색
- D. 프로젝트 팀으로부터의 조언과 함께 IMS "사례집" 발간
- E. 다양한 중소기업 부문에서 특별히 조정되는 사건들의 배포

중소기업의 참여 검토와 더 큰 요구를 인식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전개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또한 대학과 정부 연구소기관의 참여를 촉구하는데 유용하다.

## XIII. 결과의 보급

정보의 보급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IMS 프로그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보보급은 부록 2에 있는 지적소유권 정관(IPR Guideline)에 따라야 한다.

정보보급은 프로젝트, 지역, 지역간 수준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보급은 학계 멤버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심포지움, 간행물 결과도 포함한다.

[ 목표 ]

다음의 조항들은 IMS 프로그램에 가입을 원하는 파트너들을 위한 권고원칙 및 의무조항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 조항의 목표는 프로젝트의 공동연구 개발 기간 동안에 발생되고 사용되는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a) 프로젝트 수행중 발생하는 각 참여지역/국가의 공헌과 이익의 균형과 공평성 유지
- (b) 파트너들이 협상할 때에 필요한 유동성과 프로젝트간 또는 파트너간의 진행과정에 대한 확실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적절한 균형
- (c) 연구결과는 공동연구 기간동안 형성된 지적재산권의 공평한 분할과 보호의 과정을 통해 파트너에 의해 공유

**Article 1 : 정의**

**1.1 수익배분(Accounting) :** FOEEGROUND 정보를 단독 또는 공유로 소유한 한 파트너가 제 3자에게 공표, 인가, 할당할 경우, 파트너간에 인가료나 royalty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1.2 동맹기관(Affiliate) :** 파트너에게 직,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법적인 단체, 또는 파트너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적인 단체, 또는 파트너와 동등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가진 법적인 단체를 일컬음. 그러나 정부를 통한 소유권 및 통제권은 본질적으로 동맹기관의 자격을 형성하지 않음.

소유권 또는 통제권은 직, 간접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실현한다.

- a) 납입자본금 액면가격의 50% 이상을 소유
- b)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사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사람을 선출할 권리를 소유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이사를 선출, 임명할 권리를 소유하거나, 또는 이사와 같은 기능을 소유한 사람
- c)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계약을 통해 회사의 경영 및 운영권의 통제에 대해 권리를 소유

**1.3 BACKGROUND** : FOREGROUND 정보가 아니면서 BACKGROUND RIGHTS을 제외하였을 때, 파트너와 동맹기관에 소유된 모든 정보 및 지적재산권

**1.4 BACKGROUND RIGHTS** :

- 1) 발명품, 디자인, 실용신안, 응용에 대한 특허가 파트너 및 그들의 동맹기관에게 소유, 공표되는 권리,
- 2) FOREGROUND의 상업적 이용을 위하거나 또는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라이선스

**1.5 비공개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하고, 법 또는 서명된 기밀합의하에 의해서만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

**1.6 컨소시엄(CONSORTIUM)** : 프로젝트를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한 3또는 그 이상의 그룹 모임

**1.7 협력계약(COOPERATION AGREEMENT)** : 프로젝트의 수행에 대해 컨소시엄의 모든 파트너들이 서명한 동의 내용들

**1.8 FOREGROUND** : 프로젝트 수행시 처음으로 발생, 착안, 발견, 개발된 모든정보 및 지적재산권

**1.9 그룹(GROUP)** : 일정한 사업에 참여하는 한 지역의 모든 참여기관들

**1.10 IMS PROGRAM** : 지적생산시스템 프로그램

**1.1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의 제 2조 8항에 정의된 모든 권리

**1.12 비영리기관(NON-PROFIT INSTITUTIONS)** : 이윤추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개인, 공공단체로써 FOREGROUND의 정보를 상업적 이용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 법적인 단체

**1.13 참여지역/국가(PARTICIPANT)** : IM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국가

**1.14 파트너(PARTNER)** : 수행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력계약에 협상역할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1.15 프로젝트(PROJECT) : IMS 프로그램 산하의 컨소시엄에서 수행되는 연구 개발사업

1.16 요약정보(SUMMARY INFORMATION) : 비공개정보의 공지를 제외한 프로젝트의 목표, 현황 및 결과를 알려주는 문서

## Article 2 : 의무조항

각 협력계약은 이 글의 2.1-2.13의 각 조항과 완전히 일치하는 명문화된 약정과 조건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각협력계약에서 사용되는 정의들은 이 문서의 **Article 1**에서 정의될 것이다.

프로젝트, 잠정적인 파트너, 또는 그의 동맹기관이 법 또는 협의에 의해 정부의 조건을 따라야 하고, 그 조건이 협력계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경우에, 잠정적인 파트너는 협력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앞서 다른 파트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정부의 조건을 따라야만 한다면, 파트너들은 FOREGROUND의 소유권, 사용, 공개 및 라이선스가 이 조항들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프로젝트 착수 초기부터 파트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모든 동맹기관에 대한 사항을 다른 파트너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중 앞에서 말한 동맹기관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도 다른 파트너들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동맹기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법인이 등장한 직후, 파트너는 협력계약에 의거 이 조항에서 성립된 권리와 의무에서 동맹기관을 배제할 수 있다.

## 문서 협정

2.1 파트너들은 이 문서에 일치되는 범위에서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제하는 문서화된 협력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 소유

2.2 FOREGROUND는 그것의 발생에 참여한 단독파트너 또는 공동의 파트너에게 소유될 것

이다.

**2.3** FOREGROUND의 단독 소유자인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수익배분 없이 FOREGROUND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가 줄 수 있다.

**2.4** 협력계약에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FOREGROUND의 공동 소유자인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동의나 수익배분 없이 FOREGROUND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가 줄 수 있다.

**2.5** 파트너는 BACKGROUND, BACKGROUND 권리, FOREGROUND와 관련된 독점 및 공동의 소유권을 다른 파트너의 동의나 수익배분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BACKGROUND 권리 또는 FOREGROUND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양도한 파트너들은 협력 계약에 준하여 각 양도를 정해야 하며, 또한 각 양도인은 양수인 협력계약에 명시된 양도인의 의무에 따르겠다는 서명서를 양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정보의 보급

**2.6** 요약정보는 다른 프로젝트에 속한 모든 파트너와 IMS 프로그램하의 위원회에 배포할 것이다.

**2.7** 컨소시엄은 프로젝트의 종료시점에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급해야 한다.

## 라이선스 권리

### Foreground

**2.8** 각 파트너와 그의 동맹기관들은 연구개발의 목적과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FOREGROUND를 로열티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상업적 이용이란 사용, 제작, 판매, 수입의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a) 파트너들은 비영리 기관에 전적으로 소유된 FOREGROUND에 있어 상업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비영리 기관 파트너들에게는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대해 협력계약에 동의할 수 있고 또한

(b) 파트너들은 비영리 기관에 공동으로 소유된 FOREGROUND에 있어 상업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비영리 기관 파트너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대해 협력계약에 동의할 수 있다, 단 로열티는 작고 IMS 프로그램의 공헌과 이익이 균형 있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에 일치해야한다.

**2.9**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와 그들의 동맹기관들은 각 파트너와 그들의 동맹기관들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자에게 FOREGROUND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sub-license해서는 않된다.

- (a)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의 목적으로 FOREGROUND의 정보를 제공
- (b) object code에 있어서 FOREGROUND의 소프트웨어 형성부분에 대한 sub-license
- (c) 원칙적으로 FOREGROUND를 알리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때

## Background

**2.10** 프로젝트 수행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BACKGROUND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특허를 줄 수 있다, 단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2.11** 파트너들과 그들의 동맹기관들은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목적 만을 위한 경우 별도의 금전적인 또는 기타 대가없이 다른 파트너들 및 동맹기관들의 BACKGROUND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2.12** FOREGROUND의 정상적인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 파트너들과 그들의 동맹기관들은 다른 파트너들 및 동맹기관들에게 BACKGROUND 권리의 라이선스를 주어야만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

- (a) 라이선스를 소유한 파트너 또는 동맹기관들이 법적인 문제 또는 협력계약의 서명전에 발생하는 계약상의 의무문제 때문에 협력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라이선스와 BACKGROUND 권리를 줄 수 없을 때
- (b) 파트너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협력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BACKGROUND 권리의 제외에 대해 동의하였을 때.

## 권리의 존속

**2.13** 협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FOREGROUND, BACKGROUND, 및 BACKGROUND 권리에 대해 파트너와 동맹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된다는 것을 협력계

약에 명시해야 한다.

### Article 3 : 협력계약에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조항들

파트너들은 그들의 협력계약에 있는 다음 각 조항들에 역점을 둘 것이다.

#### 결과의 공표

3.1 파트너들은 요약정보를 제외한 다른 프로젝트 결과의 공표를 위한 다른 파트너들로부터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역점을 둘 것이다.

3.2 파트너들은, 다음의 글 3.3과 3.4에 의거 FOREGROUND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면, 비영리 기관인 파트너들이 학술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들만이 소유한 FOREGROUND를 공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역점을 둘 것이다.

#### Foreground의 보호

3.3 파트너들은 지적재산권을 통한 FOREGROUND의 법적인 보호를 추구하고 나갈 계획을 명시할 것이다. 그리고 발명품의 창작에 대해서는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파트너들에게 보호문제에 대해 신속히 통보할 것이며 발명품의 요약서도 제공할 것이다.

3.4 파트너들은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파트너들에게 신속히 통보해 줄 것이며, 또한 요청이 있거나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발명품의 공표에 대한 사항도 다를 것이다.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다른 파트너가 이런 보호를 수행할 경우, FOREGROUND를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은 그런 보호를 우구하지 않는다 해도 협력할 것이다.

#### 비공개 정보

3.5 파트너들은 협력계약을 받은 파트너가 이 정보를 제공할 당시 합의된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어 단독적으로 또는 동맹기관들 만이 사용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시 할 것이다.

#### 분쟁의 해결과 적용 법률

3.6 파트너들은 분쟁 해결 방법에 있어서 그들의 협력계약에 동의할 것이다.

3.7 파트너들은 협력계약을 통제할 법에 대해 그들의 협력계약에 동의할 것이다.

#### Article 4 : 선택 조항들

파트너들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동맹기관 조항
- 독점금지 / 경쟁법규 문제
- 계약의 해지 및 종료
- 고용주 / 고용인의 관계
- 수출통제 및 승인
- 동의를 범위
- 제 3자의 범위
- 라이선스 받은 기술의 사용 시 발생하는 licensor의 책임
- 일시적 / 고용인과 발생하는 권리
- 프로젝트의 신규 파트너들 가입 및 탈퇴 문제
- 비공개 자료에 대한 보호, 사용, 비밀유지의 의무
- 보충자료
- BACKGROUND 권리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사용료
- S/W의 source code
- 관세
- 기간 / 동의기간

파트너들은 그들의 프로젝트 수행 중 특별한 상황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협력계약에 다른 조항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사항도 Article 1,2에 대해 상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한다.

#### CCA 모델

본 동의서는 IMS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아래 파트너들에 의해 xxxx년 xx월 xx일 작성되었다.

호주

[파트너 기관명]

[파트너 기관명]

캐나다

[파트너 기관명]

[파트너 기관명]

유럽 연합

[파트너 기관명]

[파트너 기관명]

일본

[파트너 기관명]

[파트너 기관명]

스위스

[파트너 기관명]

[파트너 기관명]

미국

[파트너 기관명]

[파트너 기관명]

한국

[파트너 기관명]

[파트너 기관명]

## [ 배경 ]

A. 파트너들은 IMS 프로그램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전제로 프로젝트 공동수행을 위해 각 지역에서 모인 파트너들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한다.

B. 파트너들은 프로젝트 수행과 결과의 활용에 대해 각 기관들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써

기술하고자 한다.

C. 파트너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지적재산권 조항에 있어 지능형생산시스템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며, 조항의 의무사항 부분 중 본 협력동의서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은 폐지하는 것을 인정한다.

D. 프로젝트 수행하에 발생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공평하게 분배되는 동안 파트너들은 프로젝트 수행 결과가 IMS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보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파트너들의 동의 :**

## **Article 1 - Definitions**

### **Section 1**

본 협정 동의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정의되었다.

**1. 수익배분(ACCOUNTING) :** FOREGROUND 정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한 파트너가 제 3자에게 FOREGROUND 정보를 공표, 인가, 할당할 경우 정보를 소유한 파트너와 다른 파트너간의 로열티나 인가료(license fee)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2. 동맹기관(AFFILIATE) :** 파트너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법적인 단체, 또는 파트너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적인 단체, 또는 파트너와 동등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가진 법적인 단체를 일컫음. 그러나 정부를 통한 소유권 및 통제권은 본질적으로 동맹기관의 자격을 형성하지 않음.

소유권 또는 통제권은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실현됨.

(a) 납입자본금 액면가격의 50% 이상을 소유.

(b)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사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사람을 선출할 권리를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이사를 선출, 임명할 권리를 소유하거나, 또는 이사와 같은 기능을 소유한 사람.

(c)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계약을 통해 회사의 경영 및 운영권의 통제에 대해 권리를 소유.

3. **BACKGROUND** : FOREGROUND 정보가 아니면서 BACKGROUND RIGHTS을 제외하였을 때 파트너와 동맹기관에 소유되고 통제되는 모든 정보 및 지적재산권.

4. **BACKGROUND RIGHTS** :

- 1) 발명품, 디자인, 실용신안, 응용에 대한 특허가 파트너 및 그들의 동맹기관에 소유, 통제되는 권리,
- 2) FOREGROUND의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거나 또는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라이선스.

5.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하고 법 또는 서명된 기밀합의 하에 의해서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6. **컨소시엄** : 본 협정동의서 하에서 프로젝트를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한 3 또는 그 이상의 그룹 모임.

7. **협정동의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의 모든 파트너들이 동의하여 서명한 합의서.

8. **코디네이팅 파트너(COORDINATING PARTNER)** : IMS 프로그램내의 다른 관련 지역 사무국과 컨소시엄에 참가한 다른 그룹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그룹에서 선정된 파트너 (Annex 2 Item B에 명시).

9. **효력발생일** : 본 협정동의서가 모든 파트너들에 의해 서명되고 모든 파트너들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기로 한 날.

10. **FOREGROUND** : 프로젝트 수행시 처음으로 발생, 착안, 발견, 개발된 모든 정보 및 지적재산권.

11. **그룹** : 일정한 사업에 참여하는 한 지역의 모든 파트너들.

12. **IMS 프로그램** : 지능형생산시스템 프로그램.

13. **지적재산권** :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의 제 2조 8항에 정의된 모든 권리. 단, 상표권, 서비스마크, 상업명 및 명칭은 제외 (Annex 1 참조).

14. **국제간사 (ICP: INTERNATIONAL COORDINATING PARTNER)** : 해당 프로젝트, 기타

프로젝트, 지역간 사무국과의 조정을 위하여 컨소시엄에서 선정된 파트너 (Annex 2 Item C에 명시).

15. **비영리기관** : 이윤추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개인, 공공단체로 FOREGROUND의 정보를 상업적 이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법적 단체 (Annex 2 Item E에 명시).

16. **참여지역/국가(PARTICIPANT)** : IM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호주, 캐나다, EU, 스위스, 일본, 미국 및 신규 가입이 승인된 새로운 지역/국가.

17. **파트너** : 수행 프로젝트를 위하여 협정동의서에 협상역할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Annex 2 Item A에 명시).

18. **프로젝트** : IMS 프로그램 산하 컨소시엄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개발 과제 (Annex 3에 명시).

19. **요약정보** :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프로젝트의 목표, 현황 및 결과를 알려주는 문서.

20. **기술분야 담당자** : 참여 파트너들에게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담당처 역할을 하는 파트너 대표자 (Annex 2 Item D에 명시).

## Section 2 (Interpretation)

본 협정 동의서에 :

- (a) 제목은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조약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b) 상세한 설명은 본 동의서 일부분에서 설명될 것이다. 만약 내용 문맥중 반대의 경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 (c) 단수를 나타내는 말은 복수를 포함(반대의 경우 포함), 주어진 성을 나타내는 말은 다른 모든 성을 포함, 개인을 나타내는 말은 법인단체를 포함(반대의 경우 포함).
- (d) 본 협정동의서의 조건 및 조항은 부록에도 명시되어 있다.

## Section 3 (Overall Submission to IMS Provisions)

파트너들은 만약 본 협정동의서의 조항이 IMS 지적재산권 조항의 의무조항과 상충하면

IMS 지적재산권 조항이 우선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Article 2 –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 **Section 1 (Role of Each Partner)**

(a) 파트너들은 IMS 프로그램의 목표와 요건에 일치하는 프로젝트의 공동수행에 동의한다. 여러 기술적인 사항들이 프로젝트 기간동안 수행될 것이며 각 파트너에 의해 수행될 세부내용들은 Annex 3에 기술된다.

### **Section 2 (Organizational Structure)**

(a)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직 구조 및 일정은 Annex 4에 명시된다. 파트너들은 Article 10의 Section 6 조항에 따라 부록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

### **Section 3 (Technical Role of Contact and Coordinating Partner)**

- (a) 각 파트너는 Annex 2 Item D에 명시된 기술 분야 담당자를 지정한다.
- (b) 기술 분야 담당자는 기술적 조언을 위한 체제 일정 조정, 적절한 보고 및 기타 자료의 유지, 경우에 따라서는 본 협정 동의서 하에서 교환되는 BACKGROUND, FOREGROUND, 및 모든 보고서의 수발업무 등의 역할도 담당한다. 파트너는 본 협정동의서의 기간동안 어느 때든 기술 분야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다른 파트너들에게는 서면상으로 통지한다.
- (c) 각 그룹의 코디네이팅 파트너는 Annex 2 Item B에 명시된다. 코디네이팅 파트너는 다른 그룹들 및 지역사무국과의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 (d) 프로젝트 국제간사는 Annex 2 Item C에 명시된다. 역할로는,
- (i) Article 1의 Definition 14에서 언급된 사항들
  - (ii) 국제운영위원회(ISC)에 업무 보고
  - (iii) 기타.]

### **Section 3 (Technical Report)**

(a) 파트너들은 본 협정동의서 기간동안 수행한 프로젝트 관련 개별 활동 및 진행상황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기술 분야 담당자를 통해 교환한다.

- (b) 본 Article subsection 3(a)에 준해 만들어진 모든 기술보고서는 영어로 작성한다.
- (c) 본 Article subsection 3(a)에 준해 만들어진 모든 보고서의 보고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될 것이며 각 보고서는 보고기간 마지막으로부터 60일 이전에 각 파트너에게 제공될 것이다.
- (d) 본 Article subsections 3(a), 3(c)에도 불구하고, 각 파트너의 첫번째 기술보고서 기간은 효력 발생일부터 첫번째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까지가 될 것이다.

#### **Section 4 (Summary Information)**

- (a) 요약 보고서는 다른 프로젝트에 속한 모든 파트너 및 IMS 프로그램 위원회에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 (b)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요약보고서를 포함한 일반보고서를 프로젝트 종료시점에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

#### **Section 5 (Publication)**

- (a) Article 4의 subsection 2(b)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 파트너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행하기에 앞서 다른 파트너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다.
- (b) 본 Article subsection 5(a)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의 파트너들은 Article 5 Section 1에 따라 FOREGROUND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면,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그들 단독으로 소유한 FOREGROUND를 공표할 수도 있다.

#### **Section 6 (Affiliates)**

- (a)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한 동맹기관들은 Annex 5 Item A에 기재된다. 본 협정동의서 기간동안 파트너가 동맹기관을 변경, 추가, 탈퇴시킬 때는 다른 파트너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 즉시 알릴 것이며 Annex 5 Item A에 적절히 수정할 것이다.
- (b) 본 프로젝트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된 동맹기관의 이름은 Annex 5 Item B에 기재된다.

#### **Section 7 (New Partners)**

- (a) 어떠한 법인 및 개인도 본 협정동의서에 명시된 조항에 다른 파트너와 같이 동의하는 사인을 하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Section 8 (Withdrawal of Partners)**

파트너가 협정 동의서에서 탈퇴를 원한다면 본 Article Section 5, Article 4의 Section 3, Article 9의 Section 2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책임 또는 의무 없이 다른 파트너에게 60일 이전에 공식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Article 3 - Confidentiality

### Section 1 (Confidentiality)

(a) 한 파트너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정보(BACKGROUND, FOREGROUND 포함)는 문서든 전자적 형태든 구두로 제시한 것이든 유형에 상관없이 본 협정동의서 하의 프로젝트에 참가한 다른 파트너에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기밀정보로 취급되어 정보를 받은 파트너에 의해 정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동안 지켜질 것이다.

(b) 파트너에 의해 제공된 기밀정보는, Article 4의 Section 2에서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한 파트너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정보를 받은 파트너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약,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이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유지 및 서비스를 위해 다른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잉여 정보(아래 c항 참조)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다.

(c) 잉여 정보란 본 협정동의서 기간동안 이러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파트너의 고용인들에 의해 보유될 수 있는 무형 형태의 정보- 단, 전자형태로 저장되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d) 다른 파트너로부터 기밀정보를 받은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기밀정보의 사용 및 발표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 (1) 대중적으로 정보가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 (2) 제 3자로부터 정보를 합법적으로 받은 경우
- (3) 정보제공 파트너로부터 정보를 받기 이전에 정보를 제공받은 파트너 및 그들의 동맹기관에 의해 정보가 독자적으로 소유된 경우
- (4) 정보제공 파트너의 정보공개와 상관없이 정보를 제공받은 파트너 및 그들의 동맹기관에 의해 정보가 독자적으로 개발에 이용될 경우
- (5) 정보제공 파트너들이 그들의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

받는 파트너들도 기밀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또는 우연히 정보가 누출된 경우,

(6) 특허적용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 파트너에 의해 정식으로 사용권한을 받은 경우, 특허적용의 준비, 제출 및 청구를 위해 특허변호사, 특허대리인, 특허사무소 또는 파트너에 의해 정보공해가 합법적으로 필요하게 될 경우,

(7) 마케팅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파트너 및 동맹기관에 의해 정보가 자연적으로 공개된 경우,

(8) 법 또는 법원명령에 의해 정보발표가 필요할 경우

## Section 2 (Supplying Partner)

(a) 본 협정동의서 하에 제공된 기밀정보는 정보제공파트너의 소유이다.

(b) 모든 파트너는, 기밀정보를 다른 파트너에게 제공했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그들의 자유재량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고 어떠한 목적에서든 그들의 소유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 Section 3 (Problematic Country of Patent Application)

(1) 파트너들은 정보제공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받은 기밀정보 및 BACKGROUND의 권리주장 또는 공표를 위한 특허신청을 다른 나라에 신청하거나 발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 Article 4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Section 1 (Ownership)

(a) FOREGROUND는 그것의 발생에 참여한 단독파트너 또는 공동의 파트너들에게 소유될 것이다.

(b) FOREGROUND의 단독소유자인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에게 수익배분 없이 FOREGROUND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가 줄 수 있다.

(c) FOREGROUND의 공동소유자인 파트너는 FOREGROUND 정보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른

파트너의 동의 및 수익배분 없이 제 3자에게 FOREGROUND를 제공하거나 인가할 수 있다.

(d) 파트너는 BACKGROUND, BACKGROUND RIGHTS, FOREGROUND와 관련된 독점 및 공동소유권을 다른 파트너의 동의나 수익배분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BACKGROUND RIGHTS과 FOREGROUND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양도한 파트너는 협력계약에 준하여 각 양도를 정해야 하며, 또한 각 양도인은 양수인 협력계약에 명시된 양도인의 의무에 따르겠다는 서명서를 양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러한 양도가 발생하자마자, 양도인은 양수인의 이름 및 주소가 적힌 문서를 다른 파트너에게 알릴 것이다.

## Section 2 (License Rights)

[토론: IMS IPR 의무조항의 목적은 특별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제상황과 서면상으로 동의된 로열티 조항이 컨소시엄 동의서에 명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a) 각 파트너 및 그들의 동맹기관은 연구개발 목적과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FOREGROUND를 로열티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상업적 이용이란 사용, 제작, 판매, 수입의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 파트너들은 비영리기관에 단독으로 소유된 FOREGROUND에 있어 상업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비영리기관 파트너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2) 파트너들은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된 FOREGROUND에 있어 상업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비영리기관 파트너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로열티는 IMS 프로그램의 공헌과 이익이 균형 있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참가한 파트너들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b)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와 그들의 동맹기관은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FOREGROUND를 제공하거나 sub-license 할 수 없다.

(1) 파트너의 제품 제조, 수입, 판매의 목적으로 인가받은 FOREGROUND 정보의 제공

(2) object code에 있어서 FOREGROUND의 소프트웨어 형성부문에 대한 sub-license

(3)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FOREGROUND를 알리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때

## Section 3 (BACKGROUND)

(a) BACKGROUND의 소유권은 본 프로젝트의 참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 파트너와 그들의 동맹기관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파트너에게 그들의 BACKGROUND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인가를 줄 수 있다.

(c) 파트너와 그들의 동맹기관은 프로젝트 연구개발 목적만을 위할 경우 별도의 금전적 또는 기타 대가 없이 다른 파트너 및 그들의 동맹기관의 BACKGROUND RIGHTS를 사용할 수 있다.

(d) FOREGROUND의 정상적인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파트너와 그들의 동맹기관은 다른 파트너 및 동맹기관에 BACKGROUND RIGHTS의 라이선스를 주어야만 한다.

(e) 본 Article subsection 3(d)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들은 Annex 6에 명시된 BACKGROUND RIGHTS이 본 Article 4 subsection 3(d)의 요구사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 **(Option 2)**

(e) BACKGROUND와 BACKGROUND RIGHTS, 본 협정동의서 Annex 7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software source codes는 비영리기관 파트너들을 위해 본 협정동의서의 조항을 사용할 것이며 인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 **Section 4 (Software Source Code) [- OPTIONAL]**

[아래 명시된 것은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다.]

#### **(Option 1)**

(a) 어떠한 파트너 또는 동맹기관이 본 프로젝트의 성과에 필요한 software source code와 BACKGROUND 정보로 software source code를 다른 파트너 또는 동맹기관에 사용할 권리를 주거나 정보를 공개한다면, 정보를 받은 파트너 또는 동맹기관은 정보공개 및 인가된 software source code에 대한 본 협정동의서 Article 3을 따를 것이다.

또한 정보를 받은 파트너 및 동맹기관은 정보공개 파트너 및 동맹기관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타 파생물의 사용권리를 양도하며 정보를 공

개할 것이다.

(b) 파트너와 그들의 동맹기관은 본 프로젝트에서 software source code 라이선스가 FOREGROUND의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라이선스를 다른 파트너와 동맹기관에 양도할 것이다.

또는

## **(Option 2)**

(a) 어떠한 파트너가 그들의 software source code의 인가 및 정보공개를 동의한다면 이러한 공개 및 인가는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위해서 로열티 없이 이용될 것이며 정보의 기밀성과 사용에 관련된 내용은 Article 3을 따를 것이다.

(b) 만약 위 subsection 4(a)에 따라 공개된 software source code가 이러한 software source code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FOREGROUND의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oftware source code를 소유한 파트너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요청에 대해, 참여 파트너들의 동의를 얻어 software source code의 라이선스를 다른 파트너와 그들의 동맹기관에게 양도할 것이다.

## **Section 5 (Liability)**

본 협정동의서에 따라 인가받은 BACKGROUND, BACKGROUND RIGHTS, FOREGROUND와 관련하여, 이러한 모든 라이선스들은 각 라이선스가 특허받은 기술과 정보의 사용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손해, 클레임, 로스, 비용 또는 손해 및 평가에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조항에만 양도될 것이다.

그리고 각 라이선스 소유자는 이러한 사용에 대해 발생한 사항에는 책임이 없다.

## **Section 6 (Survival of Rights)**

위 Article 4 Section 1 내용에도 불구하고, FOREGROUND, BACKGROUND, BACKGROUND RIGHTS에 대한 파트너와 동맹기관들의 권리와 의무는 본 협정동의서 기간종료 또는 만기동안 존재할 것이다.

## Article 5 – Protection of Foreground

[IMS IPR 조항의 원 목적은 다양한 컨소시엄 협정 동의서 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들이 분명하게 정의되도록 하는데 있었다. 다양한 사항들이 있는데, 모든 관련 지역사무국 또는 IMS 운영위원회가 동의한다면 사항들 전부 또는 일부를 이곳에 삽입할 수 있다.]

### Section 1 (Protection of FOREGROUND)

(a) 파트너들은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FOREGROUND의 법적인 보호를 추구해 나갈 계획을 명시할 것이다. 그리고 발명품의 창작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파트너에게 보호문제에 대해 신속히 통보할 것이며 발명품의 요약서도 제공할 것이다.

(b) 공동으로 소유된 FOREGROUND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은 FOREGROUND를 소유한 파트너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c) 만약 프로젝트 기간동안 FOREGROUND를 창출, 개발, 발전시킨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이 FOREGROUND의 보호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들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다른 파트너에게 FOREGROUND 정보를 즉각 알릴 것이며, 다른 파트너가 FOREGROUND의 보호를 수행할 경우는 이러한 보호에 협력할 것이다.

## Article 6 – Compensation [- OPTIONAL]

파트너들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신들의 비용 및 본 협정동의서의 직, 간접적 결과로 빚어진 자본지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본 협정동의서 Annex 3에 제시된 직무와 관련한 특정양의 인력 및 비용 소모와 협정동의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투자 형성에는 파트너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 Article 7 – Governmental Requirement

프로젝트 잠정적 파트너 또는 그들의 동맹기관들이 정부의 요구에 -법 또는 동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이러한 요구들은 협정동의서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잠정적 파트너들은 이러한 모든 요구들이 협정동의서 사인 이전에 알려지거나 또는 정부요

구로 알려지는 한 즉각 다른 파트너에게 알릴 것이다. 파트너들은 FOREGROUND의 소유, 사용, 공개, 인가가 IMS IPR 의무조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프로젝트가 Article 10 Section 3에서 제시되는 것을 제외한 정부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면 본 협정동의서의 조항들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한다.

협정동의서 이전 또는 사인 당시에 특정한 파트너들에 의해 공개된 정부의 요구는 Annex 7에 있다.

## **Article 8 - Disclaimer [ - Optional]**

### **Section 1 (Disclaimer)**

파트너는

- 1) 라이선스 또는 다른 권리들이 승인된 상황에서 IPR의 타당성,
- 2) 다른 파트너들에게 제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또는 제품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다른 파트너들의 능력,
- 3) 이러한 제품과 관련한 제 3자의 클레임,
- 4) 제 3자에게 속한 IPR의 규정 위반을 포함하여 파트너들의 정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클레임,
- 5) 이러한 규정위반에 근거하여 처리하는데 포함된 손해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 **Article 9 - Term and Termination**

### **Section 1 (Term)**

본 협정동의서는 효력 발생일부터 기간 종료일까지 효력이 지속될 것이다.

### **Section 2 (Breach)**

(a) 만약 파트너가 협정동의서의 의무조항을 불이행하였다면 다른 파트너들은 불이행 파트너에게 서면통지로 불이행 조항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적을 받은 파트너는 지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제명될 수도

있다.

(b) 이러한 경우, 제명된 파트너는 의무조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종류의 비용, 손실, 책임, 피해, 클레임 등에 대해 보상할 것이다. - 삭제?

### Section 3 (Termination)

본 협정동의서는 모든 파트너들의 서면 동의에 의해 종료될 것이다.

### Section 4 (Final Report)

본 협정동의서의 종료 또는 취소의 경우, 모든 파트너들은 프로젝트 종료 또는 취소일까지 수행한 모든 작업을 기록하여 최종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이러한 최종보고서의 작성완료 시점은 협정동의서 종료 또는 취소일로부터 90일 후가 될 것이다.

## Article 10 - Miscellaneous

### Section 1 (Representation)

각 파트너는 협정동의서에 작성된 대로 지적재산권 또는 어떠한 정보의 공개 및 인가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협정동의서의 조항과 불일치하는 어떠한 양해, 임무 또는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 Section 2 (Language and Law)

본 협정동의서는 [상세설명 삽입]의 법에 따라 풀이될 것이다.

### Section 3 (Disputes)

(a) 본 협정동의서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조정 및 중재법에 따라 또한 이러한 법과 관련되어 임명된 중재인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중재재판의 통지는 중재를 요구한 파트너에 의해 알려질 것이다. 중재인에 의해 작성된 심사 판결은 사법권 또는 적용성을 가진 법원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 또는 OPTION B

(a) 본 협정동의서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은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만약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쟁 파트너들은 Article 9 Section 3에 따라 본 협정동의서의 참여를 종료할 수도 있다.

(b) 본 협정동의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중재의 절차는 중재 대상이 되는 파트너의 주된 사업 소재지에서 영어로 작성한다.

(c) 파트너간의 중재절차 기간 동안 또는 불일치 기간동안에도 본 협정동의서하의 프로젝트 성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 Section 4 (Force Majeure)

(a) 본 협정동의서에서 제시되는 것 이외에, 파트너들은 자신이 맡은 연구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연구실패나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정부 또는 행정적 규제, 다른 국가의 요구에 응하면서 발생된 실패 또는 지연,
- 2) 파트너들의 통제를 넘어서 발생한 상황, -예를 들어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내분(폭동, 사보타주, 반란), 전쟁, 침략, 사고(화재, 핵폭발), 노동파업, 통신 및 수송상의 장애-,
- 3) 연구업무에 필요한 장비, 재료, 노동, 공급자 획득의 불가능,
- 4) 프로젝트 수행에 공헌하지 않는 파트너 및 통제밖에 있는 제 3자의 행동. 그러나 각 파트너는,

(i) 예상되는 기간동안 발생하게 될 모든 무력상황,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파트너들에게 즉시 문서로 알릴 것이다.

(ii) 노동분쟁을 해결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파트너를 제외하고, 모든 파트너는 이러한 무력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iii) 파트너들은 무력상황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만 본 협정 동의서하의 의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파트너의 의무수행 실패 또는 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파트너들은 해당 파트너를 협정 동의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Section 5 (Assignment)

(a) 본 협정동의서는 파트너와 그들의 양수인을 하나로 묶어주며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

(b) 어떤 파트너도 다른 파트너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협정동의서를 양도할 수 없다. 단, 어느 특정파트너가 소유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100%) 자회사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를 하는 파트너는, 협정동의서하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조건과 조항들을 양도받는 자회사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해야 한다.

## Section 6 (Communication)

어떠한 통지나 연락이 필요할 때, 이러한 사항은 문서로 이루어지며 또한,

- (1) 개별적 전달 ;
- (2) 등기우편 또는 ;
- (3) 각 기술 분야 담당자에게 팩스 발신

[권고 : 본 절은 전달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더 많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참고 : Email을 통신수단의 공식적인 매체로 이용할 것인가?]

## Section 7 (Amendment of Cooperation Agreement)

본 협정동의서는 모든 파트너들의 사전동의하에 협정동의서 기간동안 아무때나 개정될 수 있다.

## Section 8 (Authority)

본 협정동의서의 모든 내용에 대한 조건 및 조항은 본 문서에서 언급된 다른 문서들의 조건 및 조항과 함께 파트너들간의 전반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내용에 대해서 파트너간에 이루어진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우선한다.

본 협정동의서는 프로젝트에 참가한 모든 파트너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개정, 보완 될 수 있다.

## Section 9 (Employer and Employee Relationship)

모든 파트너들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프로젝트 성과에 참여한 그들의 고용인과 계약을 유지하며 프로젝트 성과기간동안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Annex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  
(1967년 7월 14일, Stockholm).

### Article 2 (viii)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사항 :

"문학, 예술, 과학적 작품에 대한 권리; 예술가들의 작품; 포토그램과 방송,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품; 과학적 발견; 산업디자인 ; 상표, 서비스마크, 상업명, 명칭;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 산업, 과학, 문학, 예술분야에서 지적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다른 권리들."

## Annex 2

협정동의서 파트너들의 연락처정보

### A. 파트너

파트너명 :

주소 :

Email :

### B. 코디네이팅 파트너

파트너명 :

주소 :

Email :

### C. 국제간사

파트너명 :

주소 :

Email :

#### D. 연락 분야 담당자

파트너명 :

주소 :

Email :

#### E. 비영리기관

파트너명 :

주소 :

Email :

### Annex 3

프로젝트 상세정보

A. 기술적 내용

B. 각 파트너의 수행업무

### Annex 4

프로젝트 조직도/관리도

### Annex 5

동맹기관

A. 동맹기관 리스트

B. 지적재산권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동맹기관

## Annex 6

Article 4 subsection 3(d)의 요구에서 제외되는 BACKGROUND RIGHTS

## Annex 7

(정부요구사항)

요약내용

파트너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부요구의 상세 범위



## 사업참가의향서(Letter of

### Intent)

서명자는 IMS ○○프로젝트와 IMS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정히 검토하고 이해하였기에,

위임된 대표인을 통하여 본 ○○프로젝트에 참가의향을 명시하는 바이며 IMS 운영위

원회가 상세 제안서와 컨소시엄 협정동의를 승인할 때, IMS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첨

부된 지적재산권 조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컨소시엄 협정동의를 서명을 하고자 합니다.

상기 의향은 다른 서명자에 대한 법적 권리나 상환청구권의 효력이 없으며, ○○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콘소시엄  
협정동의서의 협의에 따른다.

서 명 : \_\_\_\_\_

(블록체로): \_\_\_\_\_

지위/직함 : \_\_\_\_\_

기 관 / 파트너 명 : \_\_\_\_\_

부 서 / 담 당 : \_\_\_\_\_

연 락 주 소 : \_\_\_\_\_

Fax :

Tel :

E-mail 주소 :

일 자 :

직 인 :